

의안 번호	2013	【울산광역시 중구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발 의 일 자 : 2022. 11. 10.(목)
- 발 의 자 : 이명녀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1. 10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12. 6.(화)

2. 제안이유

- 스톱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3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,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3조 ~ 제4조)
- 지원,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 ~ 제7조)
- 비밀 준수의 의무(안 제8조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

4. 검토의견

- 스톱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임.

12 (제251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- 차.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14 (제251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 - 가. 못·늪지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- 하.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 - 가. 지역개발사업
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- 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-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- 사. 자연보호활동
 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 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 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